

2017년 1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경단기 황영구 경찰학 적중내역

1. 경찰의 부정부패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미국의 월슨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며 '구조원인 가설'을 주장하였다.
- ②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한 '전체사회 가설'은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관련이 깊다.
- ③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에 의하면 공짜 커피 한 잔도 부패에 해당한다.
- ④ 선배경찰의 부패행태로부터 신입경찰이 차츰 사회화되어 신입 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는 이론은 '구조원인 가설'이다.

1. 경찰부패의 원인 [17.1승진 16.3 순경, 15.1 승진 14.3 순경, 11.2 순경, 10.1 승진 09.3 순경, 09.1 승진 08.7 순경, 08.1 승진]

전체사회 가설	① 미국 시카고경찰의 부패원인을 분석하던 월슨이 내린 결론이다. 즉 미국의 월슨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였다. ②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유사하다.
구조원인 가설	①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하였으며, 이는 신참경찰관들이 그들의 고참 동료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이다. ② 구조원인 가설은 부패의 원인을 개인적 결함보다는 조직의 체계적 원인으로 보고 있다.
씩은사과 가설	① 부패의 원인은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조직 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② 썩은 사과 가설은 부패의 원인을 조직의 체계적 원인보다는 개인적 결함으로 보고 있다.

2.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 ②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지속적인 만남 또는 연락 등으로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행동강령책임관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 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④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친족(민법 제767(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조에 따른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임용이나 파견 복귀 등이 있는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민간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표자나 임원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지속적인 만남 또는 연락 등으로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②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규정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 위원 중 3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 위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① ㉠(X) ㉡(X) ㉢(O) ㉣(X) ② ㉠(O) ㉡(X) ㉢(X) ㉣(O)
- ③ ㉠(X) ㉡(O) ㉢(O) ㉣(O) ④ ㉠(O) ㉡(O) ㉢(X) ㉣(X)

2) 구성 [17.1승진, 16.9 순경, 16.1 승진, 14. 8 순경, 14.2 경관부, 14.1 승진, 12.8 순경, 12.2 순경, 12.1 승진, 11.8 순경, 11.2 순경]

구성	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 1명 위원은 상임(정무직 차관급)으로 함
임명	② 위원장은 비상임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장 유고시 상임위원, 연장자 순으로 직무대리를 함 위원은 행정자치부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 중 2인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함
결격사유	①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경찰·검찰·국가정보원 직원, 군인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음.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4. 「경찰공무원법」상 시보임용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 ②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③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 정하여진 교육을 마친 사람을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 ④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쳐야 한다.

시보기간

- ①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
 - ②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 두 명자 휴 직 감 정

면제대상

- ① 경찰대학 졸업자 또는 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자를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
- ②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상위계급에의 승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임용예정 계급에 상응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당해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③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시에 재직한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재임용하는 경우
- ④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처분 시의 법률에 따른다.
-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1) 법적용 범위 [14.1 승진]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2)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14.1 승진]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질서위반행위 범정주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위법성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능력이 미약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한다. ③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① 및 ②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개의 질서위반 행위의 처리	①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①의 경우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과태료의 시효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6.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신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석궁·다목적발사기 및 도주차량차단장비는 ‘기타장비’에 포함된다.
- ③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검용은 제외) 및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은 ‘분사기·최루탄등’에 포함된다.
- ④ 권총·소총·기관총(기관단총을 포함)·산탄총·유탄발사기·박격포·3인치포·함포·크레모아·수류탄·폭약류 및 도검은 ‘무기’에 포함된다.

1.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17.1승진]

경찰장구	수갑·포승·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전자충격기·방패 및 전자방패
무기	권총·소총·기관총(기관단총을 포함)·산탄총·유탄발사기·박격포·3인치포·함포·크레모아·수류탄·폭약류 및 도검
분사기·최루탄등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검용을 포함) 및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
기타장비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석궁·다목적발사기 및 도주차량차단장비

7. 「경찰공무원법」상 규정이다.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

경찰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정년 : 60세

2. 계급정년

치안감 : ()년

경무관 : ()년

총경 : ()년

경정 : ()년

- ① 35 ② 34 ③ 33 ④ 32

정년
퇴직

- ① 경찰공무원의 정년

㉠ 연령정년 : 60세

㉡ 계급정년 : 치안감(4년), 경무관(6년), 총경(11년), 경정(14년)

- ② 징계로 인하여 강등(경감으로 강등된 경우 포함)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

㉠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 정년으로 한다.

㉡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 ③ 수사·정보·외사·보안등 특수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는 총경 및 경정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음.

- ④ 경찰청장은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음. 이 경우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총경·경정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어야 함.

8. 공직 분류 방식 중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계급제는 사람을, 직위분류제는 직무를 중요시한다.
- ② 직위분류제는 계급제보다 권한의 한계가 불명확하다.
- ③ 공직을 평생직장으로 이해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에는 직위분류제보다 계급제가 유리하다.
- ④ 우리나라의 공직 분류는 계급제 위주에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한 혼합형태라고 할 수 있다.

1 공직의 분류(계급제와 직위분류제)

[16.9 순경, 14.1 승진, 10.1 승진, 08.7 순경, 08.3 순경, 08.2 경간부, 07.3 경간부, 05.7 순경]

	계급제	직위분류제
적용국가	영국 · 독일 · 프랑스 · 일본 · 한국 등	1909년 미국의 시카고 시에서 처음 시작
분류방법	사람중심(일반행정가 양성에 유리)	직무중심(전문행정가 양성에 유리)
충원방식	폐쇄형	개방형
인사관리	신축적 · 탄력적 · 융통성	비신축적 · 비용통적 · 경직적
행정계획	장기적 사업계획 → 환경에 동태적 적용	단기적 사업계획 → 능률성 확보
조정 · 협조	기관 간 협조 · 조정이 용이	기관 간 협조 · 조정이 곤란
신분보장	강함	미약(민주적 통제가 용이)
권한 · 책임	불명확	명확
직업공무원제	확립 용이	확립 곤란
공무원의 격	일반행정가	전문행정가
보수체계	생활급(동일계급에 동일보수) → 보수의 적정화 · 현실화(생계비)	직무급(동일직무에 동일보수) → 보수제도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

→ 한국의 경찰조직은 계급제 위주로 되어 있으며, 거기에 직위분류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 신청

-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 심판

-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 ②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0. 「경찰 감찰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찰관은 심야(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심야에도 조사할 수 있다.
- ②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 ③ 감찰관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의 통보를 받을 때까지 감찰조사, 징계의결 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④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의무위반 행위 사실의 요지를 알릴 수 없지만 다른 감찰관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음은 고지하여야 한다.

2) 감찰활동 [17.1 승진, 14.1 승진]

감찰활동 관할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교류감찰	감찰관은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속 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11. 「경비업법」상 경비업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경비업의 업무에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가 있다.
- ㉡ 신변보호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이다.
- ㉢ 시설경비업무는 공항(항공기를 포함) 등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 ㉣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내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 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 ① 없음 ② ㉠㉡ ③ ㉠㉡㉢ ④ ㉠㉡㉢㉣

2 경비업법(시행 2016.1.26)

1. 총칙 [15.1 승진, 14.2 경간부, 14.1 승진, 12.2 순경, 11.2 순경]

용어	경비업 업무	시설 경비업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호송 경비업무	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신변 보호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특수 경비업무	공항(항공기를 포함) 등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기계 경비업무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법인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		

시 호 의 신 특 기

1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상 용어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동등'이란 실종신고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래인 또는 정신장애인 및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를 말한다.
- ② '발생지'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이 실종·가출 전 최종적으로 목격되었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신고자 등이 진술한 장소를 말하며, 신고자 등이 최종 목격 장소를 진술하지 못하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대중교통시설 등일 경우 또는 실종·가출 발생 후 10일이 경과한 때에는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실종 전 최종 주거지를 말한다.
- ③ '발견지'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발견한 장소를 말한다.
- ④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2. 실종아동 등·가출인 업무처리규칙(시행 2016. 2.25)

1) 용어 [14. 승진 12. 순경 10. 순경 10. 승진 09. 승진 08. 순경]

- ① 아동등이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말한다.
- ②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 ③ 가출인이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만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④ 발생지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이 실종·가출 전 최종적으로 목격되었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신고자 등이 진술한 장소를 말하며, 신고자 등이 최종 목격 장소를 진술하지 못하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대중교통시설 등일 경우 또는 실종·가출 발생 후 1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실종 전 최종 주거지를 말한다.
- ⑤ 발견지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한다.
- ⑥ 강력범죄란 살인·강도·변사사건 등을 말하며, 약취·유인·체포·감금은 제외한다.

1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관할 경찰관서장이 권한을 부여하면 관할 경찰서 경비교통과장도 해산명령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 자진 해산 요청은 직접 **집회주최자에게** 공개적으로 하여야 한다.
- ㉢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 번 이상**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참가자들이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하면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
- ㉣ 종결선언은 주최자에게 요청하되, 주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자·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에게 하여야 하며 종결선언의 요청은 필요적 절차로 생략할 수 없다.

① ㉠㉡

② ㉠㉢

③ ㉡㉣

④ ㉢㉣

9. 집회 및 시위의 해산 [15.1 승진 09.2 경건부, 08.1 승진 15.1 승진]

종결 선언의
요청

주최자에게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 선언을 요청하되, 주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자·연락책임자 또는 질서유지인을 통하여 종결 선언을 요청할 수 있다.

자진 해산의
요청

종결 선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종결 선언에도 불구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들이 집회 또는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직접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한다.

해산명령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번 이상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직접 해산

참가자들이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하면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

9 대테러 경비

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2016.3.3)

1) 용어

① 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테러단체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③ 테러위협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1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으로 한다.

② '테러단체'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③ '테러위협인물'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외국인을 말한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협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15. 「도로교통법」 상 '주차금지장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터널 안 및 다리 위
- ②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 ③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④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주·정차 금지 및 주차금지의 장소

1) 주차금지의 장소 [10.1 승진 07.10 순경, 07.1 승진 05.3 순경]

주차금지의 장소	① 터널 안 및 다리 위 ②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③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 소방용 방화(防火) 물통 ㉢ 소화전(消火栓)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흡수管)을 넣는 구멍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두문자 3 화는 소화도 안되어 방기 5번 터다
	④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16.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소방차
- ㉡ 구급차
- ㉢ 배기량 125cc인 이륜자동차
- ㉣ 승차정원 10명인 승합자동차

- ① 없음 ② ㉠㉡ ③ ㉠㉡㉢ ④ ㉠㉡㉢㉣

2. 운전면허의 구분 [14.3 순경, 14.1 승진, 12.8 순경, 11.8 순경, 11.2 순경, 10.1 승진, 09.4 순경, 08.10 순경, 07.3 순경]

		승용	승합	긴급	화물	건설기계	특차	원·자
1종	대형	○	○	○	○	3t 미만 지게차	대형·소형 및 구난차 제외	○
	보통	○	15인 이하	12인 이하	12t 미만	(도로운행) 3t 미만 지게차	10t 미만 (대형·소형 및 구난차 제외)	○
	소형	3륜			3륜			○
	특수						① 대형건인형 특차 ② 총중량 3.5톤 이하 소형건인형 특차 ③ 구난형 특차 ④ 2종보통으로 가능 한 차	○

17. 정보의 배포수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 통상 개인적인 대화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토의 형태로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다.
- ㉡ 정보사용자 또는 다수 인원에게 신속히 전달하는 경우에 이용되는 방법으로 강연식이나 문답식으로 진행되며, 현용정보의 배포수단으로 많이 이용된다.
- ㉢ 정보분석관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정기간행물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긴급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주로 사용되며, 신속성이 중요하다.
- ㉣ 매일 24시간에 걸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정세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망라한 보고서로 사전에 고안된 양식에 의해 매일 작성되며, 제한된 범위에서 배포된다.

- ① ㉠ 비공식적 방법 ㉡ 브리핑 ㉢ 메모 ㉣ 일일정보보고서
- ② ㉠ 비공식적 방법 ㉡ 브리핑 ㉢ 전신 ㉣ 특별보고서
- ③ ㉠ 브리핑 ㉡ 비공식적 방법 ㉢ 메모 ㉣ 특별보고서
- ④ ㉠ 브리핑 ㉡ 비공식적 방법 ㉢ 전신 ㉣ 일일정보보고서

해설

▶ 배포의 방법

[정답] ①

브리핑	정보사용자 또는 다수 인원에게 대하여 개인이 정보내용을 요약하여 구두로 설명하는 것으로, 통상 강연식이나 문답식으로 진행되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현용정보의 배포수단으로 많이 이용된다.
보고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으로 생산된 정보의 내용을 서류형태로 보고서화 하여 정보수요자에게 배포하는 방법
메 모	정기간행물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긴급한 정보, 즉, 현용정보를 전달하는데 주로 사용되며 신속성이 중요시됨
특별 보고서	축적된 정보가 다수의 사람이나 기관에게 이해관계가 있거나 가치가 있을 때에 사용하는 정보의 배포수단이다.
전신 전화	돌발적이고 긴급을 요하는 정보의 배포를 위하여 이용되는 수단이다.
정기 간행물	주간, 월간에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정기적인 문건의 형태로 배포하는 수단이다.
일일정보 보고서	당일 발생한 상황이나 익일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망라한 보고서이다.
서적	정보가 다수인의 참고나 교범을 위하여 필요할 때 이용된다.
도표 및 사진	내용을 쉽게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며 통상 타수단의 설명을 보충하거나 요약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연구과제 보고서	정보사용자 또는 어떤 관이 요청한 문제에 대하여 비교적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작성되는 장문의 보고서

18. 간첩망의 형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단일형은 간첩이 단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동조자를 포섭하지 않고 단독으로 활동하는 점조직으로 대남간첩이 가장 많이 사용하며, 간첩 상호간에 종적·횡적 연락의 차단으로 보안 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하며 활동 범위가 넓고 공작 성과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 ② 삼각형은 지하당조직에서 주로 사용하는 간첩망 형태로, 지하당 구축을 하명받은 간첩이 3명 이내의 행동공작원을 포섭하여 직접 지휘하고 포섭된 공작원 간의 횡적 연락을 차단시키는 활동 조직이다.
- ③ 피라미드형은 간첩 밑에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주공작원은 그 밑에 각각 2~3명의 행동공작원을 두는 조직형태로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활동 범위가 넓고 조직 구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 ④ 레포형은 삼각형 조직에 있어서 간첩과 주공작원 간, 행동공작원 상호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형태이다.

3) 간첩망의 형태 [15.5 순경, 15.1 승진, 14.2 경건부, 14.1 승진, 10.1 승진, 06.10 순경]

삼각형	의의	지하당 구축에 흔히 사용하는 형태로서 간첩이 3명 이내의 공작원을 포섭하여 지휘하여 공작원간 횡적 연락 차단시키는 활동조직을 말하며, 북한 간첩이 주로 사용하는 조직형태
	장점	공작원 간의 횡적연락이 안되므로 비교적 보안유지가 잘 되나, 일망타진의 가능성은 적다.
	단점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원 검거 시 간첩 정체가 쉽게 노출된다.
씨름형	의의	첩보전에 많이 이용하는 형태로서 간첩이 합법적 신분을 이용하여 적국의 이념이나 사상에 동조토록 유도하여 공작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형태
	장점	간첩활동이 자유롭고 대중적 조직 및 동원이 가능하다.
	단점	간첩의 정체가 폭로되었을 때 외교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단일형	의의	대남간첩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형태로서 간첩이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동조자 없이 단독으로 활동하는 점조직의 형태
	장점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하다.
	단점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성과가 낮다.
피라미드형	의의	간첩이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주공작원은 그 밑에 각각 2~3명의 행동공작원을 두는 조직형태
	장점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활동범위가 넓다.
	단점	행동의 노출이 쉬워 일망타진 가능성이 높으며, 조직구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레포형	의의	현재 사용되지 않는 형태로서 피라미드형 조직에 있어서 간첩과 주공작원 간, 행동공작원 상호 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조직형태

19. 「보안관찰법」 상 보안관찰 해당범죄가 아닌 것은?

- ① 「형법」 상 내란죄
- ② 「군형법」 상 일반이적죄
- ③ 「국가보안법」 상 목적수행죄
- ④ 「국가보안법」 상 금품수수죄

관련범죄	형법	해당 범죄	① 여적죄 ② 시설파괴이적죄 ③ 간첩죄 ④ 내란목적살인죄 ⑤ 외환유치죄 ⑥ 모병이적죄 ⑦ 시설제공이적죄 ⑧ 물건제공이적죄 여유 시간에 내외 모시고 물가로 갔다.
		제외 범죄	내란죄, 일반이적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내 일 전
	군형법	해당 범죄	① 반란죄 ② 반란목적의 군용물탈취 ③ 군대 및 군용시설제공죄 ④ 군용시설등파괴죄 ⑤ 간첩죄 ⑥ 일반이적죄 ⑦ 이로베 할 목적 반란불보고죄
		제외 범죄	단순반란불보고죄
	국가보안법	해당 범죄	① 총포·탄약·무기 등 편의제공죄(제9조①항) ② 잠입·탈출죄 ③ 자진지원 ④ 목적수행죄 ⑤ 금품수수죄 총 잡 자는 날은 목금
		제외 범죄	① 회합·통신죄 ② 반국가단체구성·가입·권유죄 ③ 찬양·고무죄 ④ 불고지죄 ⑤ 특수직무유기 ⑥ 무고날조죄 ⑦ 기타 편의제공죄(제9조②항) 2기 반 찬 회 + 불 특 무 기

20.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는 국민의 출국 금지 기간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다음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 (단, 기간연장은 없음)

- ㉠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개월 이내
 ㉡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 ()개월 이내
 ㉢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개월 이내
 ㉣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 ()개월 이내
 ㉤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 ()개월 이내

- ① 10 ② 16 ③ 19 ④ 20

1) 출국금지 사유 및 기간 [15.1 승진]

사유	출국금지 기간	출국정지 기간
㉠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1천만 원 이상의 벌금 또는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 ㉣ 5천만 원 이상의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 그 밖에 ㉠부터 ㉣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2억원 이상의 국세포탈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자 • 20억 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자 • 그 밖에 법무부 장관이 그 출국이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6개월 이내	3개월 이내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1개월 이내	10일 이내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1개월 이내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3개월 이내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외국인	영장 유효기간 이내	